

# 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- 검 토 의 견 서

1. 발의연월일: 2022. 3. 4.

2. 발 의 자: 흥복초 의원(대표발의) (배지훈, 이신자, 박정환, 원종진, 정창근)

## 3. 제안이유

- 대구광역시 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4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(안 제1조~안 제3조)
-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 및 안 제5조)
- 드론사업의 육성, 드론 활용의 촉진, 드론 체험 및 교육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함(안 제6조 및 안 제7조)
- 드론사업의 육성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및 재정지원에 대해 명시함(안 제8조 및 안 제9조)

## 5. 참고사항(관계법령)

-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제3조

## 6. 검토의견

- 해당 의원발의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,
- 상위법을 토대로 입법의 필요성, 상위법령 저촉 또는 중복여부, 법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입법취지에는 동의하나, 조례안 제9조 제2항 중 인용 조문에 오기가 있어 수정의견을 제출함.

## 7. 수정내용

조례안	수정(안)	사 유
제9조(재정지원) ②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	제9조(재정지원) ② 제1항— _____ _____ _____ _____.	조항 인용 오기 수정